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3264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326480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가단3045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1. 10. 27.

판결 선고 2021. 11. 1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가단304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15,499,3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99,3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C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왔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시(2016. 5. 13.)부터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말소 시(2018. 5. 11.)까지 24개월이란 시간이 있었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말소 시부터 다시 6개월여가 지나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는바, 2019. 1. 2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 23.로부터 1년 전인 2018. 1. 13. 이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내지 11호증, 을 제1, 4 내지 11,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감정인 L의 시가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김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C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C의 적극재산 중 경제적 잉여가치가 남아 있던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하였으나,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그 적극재산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예금채권,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6. 5. 10. 기준 C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S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예금 잔액은 각 '7,866원', '50,000원'이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5. 13. 이루어졌고, 위 R조합 계좌로 2016. 5. 11. 2차례 '10,780,000원'씩 입금되고, 2016. 5. 13. '4,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C이 영위하던 사업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보인다), 입금액의 대부분은 입금 당일 출금됨으로써 2016. 5. 13. 기준 예금 잔액은 '546,626원'이고 2016. 5. 17.에는 '76원'만 남았다. 2016. 5. 13. '4,000,000원'의 입금 이후 2016. 5. 31.까지 위 R조합 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돈은 없고, 피고가 2015. 5. 31.까지를 조회기한으로 하여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 비추어 그 이후에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없거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위 R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금 즉시 전액 출금되었음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예금채권으로서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이 거래처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입금액이 C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이 곧바로 출금되었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R조합 계좌의 경우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을 제11, 1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S조합 계좌의 경우 입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을 제8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S조합 계좌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6. 5. 15. '3,000,000원' 등의 돈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출금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이 입금이 이루어졌어도 입금 이후의 예금 잔액이 입금액과 차이가 없어 위 R조합 계좌와 마찬가지로 입금액이 입금 즉시 전액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가 C의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2016. 5. 기준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

가운데 예상해지환급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T보험과 U보험의 경우 당초 계약자가 피고였다가 2020. 12. 17. C로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6. 5. 10. 당시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의 채권자는 C이 아닌 피고이다.

V보험	T보험	W	25,972,800	21,479,863	22,613,200
V보험	U보험	X	3,147,000	1,470,046	2,103,311
Y보험	Z보험	AA	3,477,930	420,000	688,348
AB보험	AC보험	AD	598,200	-	168,991

더욱이 위 각 보험은 그 보험상품의 명칭에서 미루어 알 수 있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보험금의 명목 및 용도, 만기일, 납입기간, 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의 액수, 총 납입보험료 및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으로 보이는 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 의하면 대위채권자 또는 집행채권자의 해지에 의한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실제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야 그 해지환급금채권을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해지가 있기 전의 이른바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집행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책임재산으로 현실화시킬 수 없는 점, T보험 계약 등에 기하여 대출금 합계 23,369,909원(= 21,479,863원 + 1,470,046원, 420,000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상태였던 점(위 대출금 합계액은 예상해지환급금 합계액의 90%를 초과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채무자인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만한 재산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C은 실질적으로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② 반면, C은 2016. 5. 10. 당시 원고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이 사건 지급명령정보 등 참조), 위와 같이 Y보험으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42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다만,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C의 채무 중 F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채무자인 C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채무까지 C의 소극재산으로 파악할 것은 아니다).

③ 피고는 2019. 12. 19.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C이 2016. 5. 10.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제1심 제3회 변론조서 등 참조).

즉,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C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편, C은 과거에 M 도시개발구역 내의 아파트 N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인 2015. 11. 12.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를 O에게 양도한바 있는데, 피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하여 합계 3,400만 원 상당이 출금되었다. 또한 피고는 C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F이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2015. 7. 3. 7,592,672원²⁾을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각 금원을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을 일종의 '대물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C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을 대물변제계약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분양권 취득, 임의경매 취하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금원 상당에 관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즉,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앞서 본 원고, Y보험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피고에 대하여 약 4,159만 원(약 3,400만 원 + 7,592,672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C의 채무액은 합계 약 5,200만 원 이상(= 원고 약 1,000만 원 이상 + Y보험 42만 원 + 피고 약 4,159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6. 5. 10.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액은 61,623,000원이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2013. 12. 18. 대출기관으로부터 34,939,64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출이 실행된 점, ② 2016. 5. 3.부터 2018. 10. 18.까지의 위 대출 관련 상환

내역을 보면, 대출금 이자에 한해서만 상환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 원금에 대한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관련하여 피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자신이 C를 대신하여 매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2018. 10. 18.에 이르러 K조합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F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피고 2019. 3. 19.자 답변서 및 제1심 제1회 변론조서 등 참조), ④ 2018. 10. 18. 35,106,054원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짐으로써 F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비로소 완제되었는데 그 액수가 당초 대출이 실행된 원금의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관련한 잔존 대출금채무액은 약 3,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중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 가액은 약 26,623,000원이다.

C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6. 5. 10. 당시 채무액은 위 책임재산 가액을 초과한다. 즉,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고려한다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6. 5. 10.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액은 61,623,000원이고, 위 각 부동산에는 선행 근저당권인 채권최고액 합계 9,550만 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일이 2018. 5. 11.이기는 하나, 그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서 완제되었기 때문에 그 채무의 실제 완제일은 그로부터 3년 전의 날이고, 다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만이 지체되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고 2020. 6. 11.자 준비서면 및 제1심 제6회 변론조서 등 참조). 한편,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권의 납입대금을 고려하였을 때 그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3,4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 ② C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날이 2015. 11. 12.인 점, ③ G은 '자신이 C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원은 4,000만 원이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I으로부터 받은 돈도 4,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피고의 주장처럼 I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신, 기존에 이루어진 또는 예상되는 부동산 시가의 상승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하기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었을 개연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2015년경에 완제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그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그 피담보채권이 전부 만족을 얻음으로써 소멸한 때에는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2016. 5. 10.) 당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6. 5. 10. 당시의 시가 감정평가액(61,623,000원)에서 선행 근저당권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추정 피담보채무액(약 3,500만 원)을 공제하였을 때,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가액이 잔존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4)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C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지금명령 확정(2016. 4. 27.) 직후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을 대물변제로 본다 할지라도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C로부터 실질적으로 그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만족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이 법률상 배우자라는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고, 또 그 주거지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와 C은 생계를 함께 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지급명령의 C에 대한 송달일은 2016. 4. 12.이고, 그 확정일은 2016. 4. 27.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직후인 2016. 5. 10.에 있는 점, ③ 당시 C은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로서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당시 C 명의로 된 다른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C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C과 피고가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도 상당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선행 근저당권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증여계약 이후 위 선행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또한 K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가액배상은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였을 때, 그 원리금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15,499,318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 다음으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L의 시가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9. 10.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액이 77,52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27. 당시의 시가는 그와 비슷한 금액이거나 다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여기에서 말소된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였을 때 그 남은 잔존가액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15,499,318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

마지막으로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이득액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15,499,318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499,3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5,499,3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허이훈

판사김민지

별지

1)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2) 2015. 7. 3.자 출금액인 7,573,172원과 20,500원의 합계액에서 이체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